
상법 해상보험편 개정안에 관한 연구
-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Korean Marine insurance Revision Bill-Focused on
English Insurance Act 2015)

한창희*
Changhi, Han

〈국문초록〉

상법 보험편에서는 해상보험에 관한 절을 두어 29개조문(상법 제693조에서 제 718조)을 두고 있다. 해상보험실무에서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영국의 협회해상보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판례의 대부분은 영국법 준거조항의 효력을 받아들여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우리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근래 영국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례도 판시되고 있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계약체결 고지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2013년 3월 이래 시행되고 있다.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2015년 보험법과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법에서 기업보험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공정한 제공의무로 대체되었고, 워런티, 사기적 보험금청구, 보험금지급지체의 효과 등에 대하여 커다란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글은 최근의 영국보험법의 개혁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법 해상보험편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국문 주제어 : 영국의 2015년 보험법, 영국의 기업법, 공정한 제공의무, 워런티, 사기적 보험금청구, 보험금지급지체의 효과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투고일:2018. 01.10. 심사일:2018. 01. 25. 게재확정일 2018. 02. 06.

I. 머리말

상법 보험편에서는 해상보험에 관한 절을 두어 29개조문(상법 제693조에서 제718조)을 두고 있다. 해상보험실무에서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영국의 협회해상보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판례의 대부분은 영국을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으로 인정하여 영국법 준거조항의 효력을 받아들여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우리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¹⁾ 근래 영국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례도 판시되고 있다.²⁾

영국에서는 1906년 해상보험법상 지나치게 보험자에게 유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여 노르웨이, 독일 등의 신흥 해상보험시장에 주도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영국 보험업계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온 고지의무와 워런티법리를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보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2013년 3월 이래 시행되고 있다.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2015년 보험법과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법에서 기업보험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공정한 제공의무로 대체되었고, 워런티가 대폭 개정되었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보험금지급체제의 효과에 대하여서도 커다란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글은 해상보험법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하고, 최근의 영국보험법의 개혁을 연구하며,³⁾ 이를 바탕으로 상법 해상보험편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이래 대부분의 해상보험판결은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

2) 대법원 1987.7.14. 선고 96다39707 판결은 “이 보험증권의 규정 또는 첨부된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에 대하여서만 영국의 법률에 따를 것임을 이해하고 합의한다.”는 내용의 준거법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 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이정원, 영국해상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효과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제150호(2015),

한다.

II. 해상보험법에 관한 입법례

1. 영미법계국가

영국 1906년 해상보험법은 뉴질랜드(1908년), 호주(1909년), 말레이시아(1956년), 홍콩(1964년), 캐나다(1993년), 싱가포르(1993년) 등에 계수되었고, 조문의 순서를 변경한 것 외에는 거의 같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해상보험법은 존재하지 않고, 영국해상보험법을 주요한 법원으로 하고 있었지만, 워런티에 관한 1955년 연방 최고법원의 Wilburn Boat사건에서 영국법이 아니라 위반과 보험사고사이의 인과 관계를 요구하는 주법(텍사스주 보험법)을 적용한 판례이후 영국법을 적용하는 입장과 주법을 적용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⁴⁾

2. 대륙법계국가

가. 일본

일본보험법은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해상보험법은 상법 제815조에서 제8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1899년 상법제정 이후 변경이 없었다. 두 법의 조항이 충돌하면 해상보험사건을 특별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이 우선한다.⁵⁾

112~137면; 전해동·신건훈,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69권(2016), 한국무역상무학회, 407~426면; 신건훈·이병문,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 무와 관련한 주요 쟁점, 무역상무연구 76권(2017), 한국무역상무학회, 125~145면.

4) 한창희, 현대보험법의 동향, 국민대출판부, 2009, 126면 이하.

5) Shuji Yamaguchi and John Dunt, Japan: The insurance of international cargo business, in John Dunt(edited), International Cargo Insurance,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2), para 6.9.

나. 이탈리아

이탈리아 민법 제1882조에서 제1932조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보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제1885조는 해상법에 의해 규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상보험에 적용된다. 해상법 제514조에서 제547조는 항해위험의 특유한 위험에 관련된 특수한 제도인 해상보험을 규율하고 있다.⁶⁾

다. 독일

2007년 11월 23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계약법이 있고, 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상법 778조에서 900조, 그리고 905조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보험은 약관(적하보험약관은 2000년에 개정되고, 선박보험은 2010년에 개정됨)에 의해 규율되고, 약관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⁷⁾

라.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보험계약을 포함한 계약법 일반에 대해 규율하는 민법과 보험법에서 해상보험을 규율하고 있다.

마.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1989년 6월 16일 제정된 보험법이 있고, 국내운송에 대해서는 동법이 규율하지만, 국제적하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보험에 대해서는 노르웨이해상보험계획⁸⁾이 적용된다.

6) Francesco Siccardi, Italian law and practice, in John Dunt(edited), International Cargo Insurance,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2), paras 9.5-9.6.

7) Joachim F. Bartels, German law and practice, in John Dunt(edited), International Cargo Insurance,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2), paras 10.6, 10.9, 10.10.

8) 해상보험계획은 선주협회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표준약관으로 최초의 해상보험계획이 작성된 것은 1871년이고, 1996년 계획은 7차개정으로 1964년계획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선박보험(P&I 보험포함)을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선보험(제17장), 연안구조물(제18장), 선박건조위험(제19장)도 또한 담보하고, 적하보험에 대해서는 약관으로 규율하고 있다.; 한창희, 해상적하보험에서 영국법의 적용,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201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60면.

바. 중국

중국보험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02년, 2009년, 2015년 개정되었다. 해상보험의 중요하고 특유한 성격을 인정하여 1993년 7월 1일 시행된 해상법 제13장에 해상보험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삽입되었다. 보험법과 해상법사이에는 후자가 우선하고, 전자는 후자에 참조할 특수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⁹⁾

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해상보험에 적용되는 2개의 법, 단기보험법과 해상관할규제법이 있다. 단기보험법은 단기보험산업을 규율하고, 운송보험에 대해서는 규율하지만, 해상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고지의무의 효과를 규율하는 2조문이 있는데, 이는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의 관련규정과 상당히 다르다. 해상관할규제법은 해상보험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고, 해상보험에 관한 보험금청구는 해상보험금청구로 고찰되고, 관련 남아프리카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Ⅲ. 영국의 최근 해상보험법 개정 동향

1. 개정동향

1906년 해상보험법의 제정을 주도한 것은 매켄지 찰머스경이고, 그 목적은 1907년까지 약 150년동안의 약 2,000여 판결만에 기초한 법률원칙의 접근가능한 요약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1906년 시행 이래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의

9) Liu Guiming, Liang Jian and Cai Dongd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aw and practice, in John Dunt(edited), International Cargo Insurance,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2), para 13.1.

10) Andrew Robinson, South African law of cargo insurance, in John Dunt(edited), International Cargo Insurance,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2), para 14.8.

제정에 이르기까지 개정없이 유지된 것은 찰머스경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지만, 런던이라는 비교적 작은 전문시장의 상업 실무만이 입법에 반영되었다는 점, 법원이 이 원칙을 모든 유형의 보험에 적용해온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부보위험의 유형 확대에 따른 법률의 발전이 어려웠다. 최근의 영국판례는 현대적 상황에 맞도록 법률을 적용하고자 하지만, 1906년 해상보험법의 명확한 문구로 인해 탄력적 적용이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다. 1906년 해상보험법의 문구는 이전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현재에도 이 법의 문구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¹¹⁾

1906년 해상보험법의 제정의 전문성에는 의문이 없지만, 2015년 보험법 제정 이전까지 개정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첫째는 동법이 정확하고, 더 이상일 수 없다는 견해이고, 둘째는 동법에도 불구하고 판례법이 발전하여 동법은 다소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었고, 18세기의 해상보험원칙을 적용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해상보험원칙을 법원으로 하여금 적용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유해하다는 견해이다.¹²⁾

해상보험실무에서는 1906년 해상보험법이 광범위하게 무시되고 있고, 중요한 법률개정도 있었다. 호주에서는 1984년 보험계약법은 해상보험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지만, 2001년에는 유람선, 즉 소비자해상보험은 1984년 보험계약법법에 편입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험법개혁법은 보험약관과 보험보조자를 규율하였고, 부실고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개정한 1979년 계약상 손해배상책임법은 해상보험에도 적용되었다. 2001년 호주법률개정위원회는 영국이 선도적으로 해상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개정할 점이 없다고 하여 사소한 개정 이외에는 개정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보고서¹³⁾는 1906년 해상보험법의 불명료함과 결함을 적시하는 중요한 자료이다.¹⁴⁾

11)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The Business Insured's Duty of Disclosure and the Law of Warranties, Consultation Paper No 155, June 2012, para 1.13.

12) 한창희, 해상보험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16~19면.

13) Review of Marine Insurance Act 1909, Law Reform Commission Report No 91.

14) Robert Merkin and Sarah Derrington, Marine Insurance Act 1906 magnificent achievement on monstrous aberration, in edited by Rhidian Thomas,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Vol. 4,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6), para 1.3.

영국이 가장 먼저 개정하였다. 영국의 법률개정위원회의 2006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개혁작업은 눈부셨다. 많은 개혁 중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정보의 제공과 이전에 관한 새로운 체계가 창출되었고, 보험자에게 새로운 구제수단이 부여되었다. 프랑스 등에 익숙한 비율적 보상의 원칙의 개념이 영국 보험법에 도입되었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계약체결 고지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2013년 3월이래 시행되고 있다.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2015년 보험법과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법에서 기업보험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공정한 제공의무로 대체되었고, 워런티, 사기적 보험금 청구, 보험금지금지체의 효과 등에 대하여 커다란 개혁이 이루어졌다. 법률개정위원회는 현재 피보험이익, 해상보험증권의 요식증권성 등에 대한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많은 금액의 국제보험이 런던에서 인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해상보험실무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혁은 영국 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¹⁵⁾

2. 개정내용

가. 요약

(1) 2010년 제3자(보험자에 대한 권리)법¹⁶⁾

2010년 제3자(보험자에 대한 권리)법은 파산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15) David Hertzell, David Herzel, The Insurance Act 2015: Back ground and philosophy, in Malcolm Clarke and Barış Soyer(edited), The Insurance Act 2015-A new regime for commercial and marine insurance law, (informa from Routledge, 2016), para 1.1.

16) 서울고법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에 따르면 “해상적하책임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영국법인인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과 관습이 적용되고, 국제사법에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를 하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어 영국 ‘제3자 권리법’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이 적용된다.”

청구한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법은 1930년의 같은 명칭을 가진 법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2)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소비자보험의 체결을 규율하고, 소비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정한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위하여 가입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을 크게 개정하였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간단하고 적용대상이 고정되었다. 동법은 소비자보험, 즉 개인의 거래, 영업 또는 직업과 전적으로 또는 주로 무관한 목적 아래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 대해 적용된다. 이 정의는 유럽법의 일반적인 규율방식을 따랐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폐지하였다. 보험자는 적절한 질문을 하고, 소비자는 정직하고 주의를 다해 답변해야 한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소비자에게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상당한 주의의무를 지운다. 상당한 주의의 기준은 객관적인 것으로 보험의 형태와 보험이 판매되는 상황 같은 모든 사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기준이다. 개별소비자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소비자가 진실이 아닌 사실을 답변하는 경우 부실고지를 상당한 부실고지, 고의의 부실고지, 중과실의 부실고지 3가지로 구분한다. 상당한, 고의, 중과실의 부실고지는 제한적인 부실고지라고 하고, 보험자가 고지를 받아 진실한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달리 행위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구제수단을 가진다. 소비자의 부실고지가 합리적이면 보험자의 구제수단은 없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부실고지의 경우 소비자가 답변이 진실이 아니거나 오

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그 사항이 보험자에게 적정한지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보험자를 보조하기 위해 2가지가 추정되고 있다. 첫째,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인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보험자가 명확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의 주요부분이 적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고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즉 사기적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보유한다.

주의의무결여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의 구제수단은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행해졌을 것에 의거한다. (1)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2) 보험자가 다른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건은 소급하여 적용되며, 이 조건은 책임제한사유 또는 면책사유일 수 있고, (3) 보험자가 추가보험료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은 보험료에 대한 실제보험료의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이는 부실고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보험계약을 취소하던 1906년 해상보험법에 대한 중대한 개정이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부실고지를 보험위런티로 전환하는 기초조항을 폐지하는데, 1906년 해상보험법상 위런티 위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자동적으로 면책이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은 보험모집보조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의 대리인인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3) 2015년 보험법

(가) 서언

2015년 보험법은 소비자보험과 기업보험에 적용되고, 주요사항은 (1) 비소비자보험에서 계약체결이전 고지의무에 대해 위협의 공정한 제공의무를 도입, (2) 공정한 제공의위반의 경우 보험자의 구제수단, (3) 계약기초조항, (4) 위런티 위반의 효과, (5) 부적절한 위협감소조항, (6) 사기적 보험금 청구의 효과, (6) 임의규정성 등이다.

2015년 보험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의 일부를 유지하고 시행후 발전사항을 입법하고 있다. 가장 관심있는 주제는 공정한 제공의무와 워런티 기타 조건에 관한 조항이다.

(나) 공정한 제공의무

동법은 소비자가 아닌 모든 보험계약자에 대해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의무, 즉 고지의무를 유지하였지만, 의무의 틀이 발전되었다. 공정한 제공의무는 정보가 제공되는 방법과 제공 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다. 공정한 제공의무는 대기업에서 정보획득에 많은 과정이 수반하고 IT의 영향을 받을 것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의무는 제공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인식하거나 인식해야 하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거나, 그러하지 않아도 보험자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주의하게 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모든 가능한 사실과 사항의 데이터 덤핑을 하여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

보험계약자는 상급관리자가 인식하고 보험을 수배하는 자가 상당한 조사로 밝힐 수 있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상급관리자는 “어떻게 보험계약자의 행위가 관리되거나 조직되는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정의된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던 1906년 해상보험법의 내용이 새로운 법에 승계되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인식하거나 인식해야 하는 정보, 인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보험자는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이 실제로 인식하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보험자(검정인 또는 보상부서)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 또는 보험자가 쉽게 이용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시스템상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험자는 인식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공정한 제공을 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진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행위를 하였을 것임을 증명하면 보험자는 항상 구제수단을 가진다.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보유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험자가 다른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건은 소급하여 적용되고, (2) 보험자가 추가보험료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은 보험료에 대한 실제 보험료의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공정한 제공의무는 기존의 법에 기초하지만, 보험계약자는 기존의 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무엇이 상당한 조사이고, 어떻게 서류화하며, 상급관리자와 적절한 협의가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¹⁷⁾

(다) 워런티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와 사기에 관한 조항은 기업보험과 소비자보험에 적용되고, 동법은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법에 따라 기초조항을 폐지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이 워런티로 전환되면 무효이다.

2015년 보험법은 워런티를 정의하지 않고, 워런티 위반의 효과로서 위반일로부터 자동적으로 면책인 것으로 하지 않고, 정지조건으로 하였다. 보험계약자가 위반하는 동안 보장이 정지되었다가 치유되면 회복된다.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경보장치를 검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장은 중지되고 검사가 수행되면 보장이 재개한다.

위험을 감소하고자 하는 워런티와 유사 조건은 보험계약자가 불준수가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손해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위험감소조건은 특정한 유형의 손해, 특정 장소에서의 손해, 특정 시기의 “위험을 감소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연식요건과 같이 위험을 전제적으로 정의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스프링클러 워런티는 화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인접한 강으로부터의 홍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7) David Hertzell, *op. cit.*, para 1.2, p. 9.

(라) 사기적 보험금 청구

2015년 보험법은 보험계약자가 사기적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에 일련의 명확한 효과를 규정한다.¹⁸⁾ 선의 부분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가 무효이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보유한다. 보험자는 사기적 보험금 청구 이전의 진정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지만, 사기 이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임의규정성

2015년 보험법은 기업보험에서 임의규정이다. 동법은 최상의 실무에 근거하고 있고, 시장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수정할 것 같지는 않다.¹⁹⁾ 그러나 부보위험이 매우 특수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는 다수의 재보험에는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면, 보험자는 (1) 그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주의하도록 충분한 단계를 취하고, (2) 그 조건이 명확한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4) 2016년 기업법

2016년 기업법상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보험계약의 묵시적 조건이다”는 제13A조, 소비자보험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이 금지되지만,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제16A조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18) 영국 2015년 보험법 제12조는 피보험자의 사기적 보험금 청구시 보험자는 (1)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2) 사기적 행위시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사기적 행위시 이후의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거부하고, 보험료반환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기행위 이전의 당사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19) David Hertzell, *op. cit.*, para 1.2, p. 10.

나. 공정한 제공의무, 워런티, 사기적 보험금청구

(1) 공정한 제공의무

(가) 2015년 보험법 제3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는 인식하거나 인식해야 하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더라도 신중한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밝히고자 추가 질문이 필요하도록 주의하기에 충분한 제공한 고지를 하면 된다. 이는 제18조 제1항과 포기의 면제에 관한 제18조 제3항 c호의 재구성이고, 공정한 제공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무가 아닌 쌍방적 의무로 변경되었다. 즉 공정한 제공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시작하고 보험계약자가 지지만, 장래의 계약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되도록 양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보험자는 마냥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된다.

(나) 2015년 보험법 제3조 제3항은 “고지는 신중한 보험자에게 합리적으로 명백하고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자가 엄청난 양의 정돈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는 ‘데이터 덩핑’을 방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간단하거나 애매한 제공이 금지된다.

(다) 보험계약자가 개인 또는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이든,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의 범위를 정의하는 인식이 현실적인 인식 또는 추정적 인식(인식했어야 하는 것)에 기초하든, 보험계약자는 1906년 해상보험법보다 무거운 부담을 진다. 즉 보험계약자는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보만이 아니라 질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밝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1906년 해상보험법과 다르다.

(라)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보험자의 인식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유하거나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점에서 적극적인 조사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보다 협소한 의무를 진다. 보험자의 추정적 인식은 석면의 위험과 같은 ‘공통의 지식’, 온라인상에서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당해 활동분야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해 유형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가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사항”으로 정의되어 있고, 보험자와 보험중개사가 추정적 인식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지

침을 개발할 것이 기대된다.

(마) 위반시 구제수단으로 유인성요건, 즉 공정한 제공의무위반이 없었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을 보험자는 증명하여야 하고, 구제수단으로 비율적 보상원칙을 채용하는 다양화되었다.

(바) 임의규정성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투명성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2) 워런티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의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 제10조는 워런티위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정지되지만, 치유되면 다시 보장이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둘째, 동법 제11조는 보험계약의 조건의 준수가 보험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조건의 부준수가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증가하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상법 제655조 단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워런티만이 아니라 위험통제조항에도 적용된다.

셋째, 소비자보험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만,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2015년 보험법의 규정은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투명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임의규정이다.

(3) 사기적 보험금청구

(가) 소비자보험에 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기업보험에는 임의규정이다.

(나) 보험금청구에 대한 사기의 효과로서 제12조 제1항 a호와 b호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상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보험금 청구’를 정의하지 않은채 법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이 각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판례²⁰⁾와 학설²¹⁾이 사기적 보험금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의 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점과 같다.

(다) 관련보험계약에 대한 사기의 효과로서 제12조 제1항 c호는 보험자는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한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사기적 행위의 시점부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2조 제3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사기적 행위 이전에 발생하는 관련사고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

(4) 보험금지급지체의 효과

(가) 개정사항

2015년 보험법은 보험금 지급지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지만, 2016년 기업법은 법률개정위원회의 제안대로 2015년 보험법 제13A조²²⁾와 제16A조²³⁾를

-
- 20)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04다20234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2985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2007다1029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 21)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8, 161~163면;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304~312면;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285~286면.
- 22) 제13A조 보험금 청구에 관한 묵시적인 조건
-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든 보험계약상의 묵시적 조건이다.
 - (2) 상당한 기간은 보험금 청구를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포함한다.
 - (3) 상당함이 무엇인가는 모든 관련 상황에 의거하지만, (a) 보험의 유형 (b) 보험금 청구의 규모와 복잡함 (c) 법령상의 원칙과 지침의 준수 (d) 보험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다룰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a) 보험자는 분쟁이 계속중인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 제1항의 묵시적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b) 보험금 청구를 취급하는 보험자의 행위는 그 조건이 위반되었는가를 결정하는 요소일 수 있다.
 - (5) 제1항의 묵시적 조건위반에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a) 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권리 (b) 보험금에 대한 이자에 추가되고 독립한 것이다.

삽입하였다. 그 개정목적은 상당한 기간안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체하면 예견 가능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보험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수정할 수 없지만,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가 명확할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임의규정이다.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²⁴⁾에서도 보험금 지급지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나) 개정내용

①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목시적 조건

개정중점은 상당한 기간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목시적 조건을 규정하는 제13A조이다. 보험금 지급지체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제13A조 제5항은 명확히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② 상당한 기간안에 지급할 의무(2015년 보험법 제13A조 제2항, 제3항)

적시에 지급할 의무는 모든 보험계약상의 목시적인 법령상의 조건이고, 모든 보험금은 상당한 기간안에 지급되어야 한다.

③ 보험금 청구분쟁(제13A조 제4항)

법률개정위원회는 보험금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지체하는 경우 손해배

23) 제16A조 보험금 지급의 목시적 조건의 임의규정성: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

(1) 소비자에 대해 제13A조에서 규정된 사항보다 불이익하게 하는 소비자보험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조건은 무효이다.

(2) 비소비자보험에서 제13A조의 목시적 조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위반에 관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규정된 지위보다 불이익하게 하는 비소비자보험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조건은 무효이다.

(3) 제2항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a) 보험자가 알거나 (b) 위반인지 여부에 주의하지 아니하는 때이다.

(4) 제17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비소비자보험에서 제13A조에서 규정된 지위보다 불이익하게 하는 소비자보험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조건은 무효이다.

(5) 이 조에서 계약은 그 변경을 포함한다.

(6) 이 조는 보험계약에 의거한 보험금 청구의 해결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4)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2015.8.31.자 생명보험표준약관 제7조). 또한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015.8.31.자 생명보험표준약관 제40조 제2항).

상책임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2015년 보험법 제13A조 제4항은 보험자가 선의이고 합리적인 근거아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는 보험자의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조건아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A조 제4항 2호는 보험금 청구를 취급하는 보험자의 행위는 그 조건이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절한 요소일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합리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을 증가시키는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손해배상책임

상당한 기간안에 지급이 지체되었음이 증명되면, 법률개정위원회에 따르면 일반계약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또한 인과관계, 과실상계의 기준이 적용된다.

⑤ 손해배상책임의 독립성

제13A조 제5항은 보험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청구권 등과는 별개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규정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손해가 이자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나머지 부분에 관해 재판이전의 이자청구권을 가진다.

⑥ 임의규정

임의규정에 관한 제16A조에 따르면 소비자보험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적시의 지급위반임을 보험자가 인지하고 있거나 보험자가 위반 여부에 관하여 주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문언을 사용하여 보험금 지급지체에 관하여 2015년 보험법과 달리 정하는 것 즉 임의규정화가 허용된다.

Ⅳ. 상법개정안-해상보험편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해상보험편을 중심으로 상법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고지의무

2014년 법무부개정초안	개정안	이유
<p>제694조(고지의무) ①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사실은 이를 제 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p> <p>②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하여 새로운 소식과 변경된 사실을 탐지하여 보험자에게 보고하고 정정할 의무가 있다.</p> <p>③사실에 대한 고지는 대체로 정확한 때에는 이를 부실한 고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대 혹은 믿음에 관한 고지는 선의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진실한 고지라고 본다.</p>	<p>(고지의무)</p> <p>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밝히고자 추가질문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고지의무는 보험자에게 명백하고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p> <p>③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질문 기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밝혀지는 것이 상당한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④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고지가 면제된다. 다만 보험자가 보유하거나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만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p> <p>⑤공통의 지식 또는 당해 활동분야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유형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가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항은 보험자가 추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다.</p>	<p>영국의 2015년 보험법 반영</p>

2014년 법무부개정초안	개정안	이유
	<p>⑥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고지의무위반이 없었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하였을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p> <p>⑦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고,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중과실의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 고지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고,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책임을 지고, (2) 고지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보험자가 다른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3) 다른 조건으로 포함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고지의무가 이행되었더라면 받았을 보험료에 대한 실제보험료의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p> <p>⑧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시 본조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시에 불이익조항에 주의하도록 충분한 절차를 밟을 것 2. 불이익조항의 효과가 명확하고 이의가 없을 것 	

2. 워런티

2014년 법무부개정초안	개정안	이유
<p>제698조(실권특담) ①과거 혹은 장래에 일정한 사실의 존부 혹은 일정한 행위의 실행에 관해 당사자가 보험계약에서 이를 보험금의 지급조건으로 정하여 특별히 담보를 약정하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이 담보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②특담사항은 반드시 보험증권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과 효과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p> <p>③특담사항을 위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혹은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반한 사실을 안 보험자가 지체없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위반을 유서한 것으로 보며, 이후에 그 보험자는 오로지 보험료의 증액만 청구할 수 있다.</p> <p>④특담사항을 위반하면,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든 아니든, 그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든 아니었든, 보험자는 책임을 면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위반이 치유되었고, 그</p>	<p>(워런티)</p> <p>①워런티라 함은 특정한 일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을 것, 또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약속을 말한다.</p> <p>②워런티는 위험에 대하여 중요한가 여부를 묻지 않고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p> <p>③보험자는 워런티위반 이후 그 치유 이전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워런티위반으로 인한 보장정지중의 사고와 보장이 재개된 후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위반을 중지하는 경우 그 위반이 치유된다. 시간이 특정되는 워런티의 경우 후일 원래 당사자가 의도하는 것과 동일한 때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p> <p>④다음의 경우에는 워런티위반이 허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정이 변경되어 워런티가 계약의 사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2. 워런티의 충족이 그 후의 법에 의해 위법인 경우 <p>⑤워런티나 조건이 충족되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험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조건에는 적용이 배제된다.</p>	<p>영국의 2015년 보험법 반영</p>

2014년 법무부개정초안	개정안	이유
<p>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료의 위 제3항에 의한 증액 청구가 있을 때에 지급할 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p>	<p>1. 워런티나 조건의 충족이 특정한 유형의 손해, 특정한 장소에서의 손해, 특정한 시점에서의 손해를 감소하게 하는 경우</p> <p>2. 피보험자가 워런티나 조건의 불충족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해발생의 위험을 증가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p> <p>⑥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시 본조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p> <p>1.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시에 불이익조항에 주의하도록 충분한 절차를 밟을 것</p> <p>2. 불이익조항의 효과가 명확하고 이의가 없을 것</p>	

3. 감항능력의 묵시적 워런티

개정안	이유
<p>(감항능력에 관한 워런티)</p> <p>①선박 또는 적하를 항해보험에 붙인 경우에, 발항 당시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p> <p>②선박을 기간보험에 붙인 경우에 각각 항해마다 항해를 개시할 때에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항해를 개시할 때에 감항능력이 없는 것을 알거나 묵인한 때에 한하여 워런티위반이 된다.</p>	<p>영국 런던보험자협회의 선박기간보험약관반영</p>

4. 사기적 보험금청구

개정안	이유
<p>①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p> <p>②보험자는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한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사기적 행위의 시점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③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기적 행위 이전에 발생하는 관련사고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p> <p>④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시 본조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시에 불이익조항에 주의하도록 충분한 절차를 밟을 것 2. 불이익조항의 효과가 명확하고 이의가 없을 것 	<p>영국의 2015년 보험법 반영</p>

5. 보험금지급지체의 효과

상법	개정안	개정이유
<p>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①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상당한 시기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체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법정이자 또는 약정이자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p> <p>③보험자가 보험금청구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분쟁이 계속 중인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금 청구를 취급하는 보험자의 행위를 고려하여 제1항의 위반인가를 판단한다.</p> <p>④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시 본조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시에 불이익조항에 주의하도록 충분한 절차를 밟을 것 2. 불이익조항의 효과가 명확하고 이의가 없을 것 	<p>일 본 보 험 법 제2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82조 제1항 영국의; 2016년 기업법 반영</p>

〈참고문헌〉

- Andrew Robinson, South African law of cargo insurance, in John Dunt(edited), International Cargo Insurance,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2).
- avid Hertzell, David Herzel, The Insurance Act 2015: Back ground and philosophy, in Malcolm Clarke and Barış Soyer(edited), The Insurance Act 2015-A new regime for commercial and marine insurance law, (informa from Routledge, 2016).
- Francesco Siccardi, Italian law and practice, in John Dunt(edited), International Cargo Insurance,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2).
- Joachim F. Bartels, German law and practice, in John Dunt(edited), International Cargo Insurance,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2).
-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The Business Insured' s Duty of Disclosure and the Law of Warranties, Consultation Paper No 155, June 2012.
- Robert Merkin and Sarah Derrington, Marine Insurance Act 1906 magnificent achievement on monstrous aberration, in edited by Rhidian Thomas,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Vol. 4,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6).
- Shuji Yamaguchi and John Dunt, Japan: The insurance of international cargo business, in John Dunt(edited), International Cargo Insurance,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2).
-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 신건훈·이병문,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와 관련한 주요 쟁점, 무역상무연구 7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7.
- 이정원, 영국해상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효과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제

150호, 2015. 전해동·신건훈,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8.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한창희, 해상보험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한창희, 해상적하보험에서 영국법의 적용,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한창희, 현대보험법의 동향, 국민대출판부, 2009.

Abstract

Korean Commercial Act contains about 30 articles relating to marine insurance. Usually in marine insurance practice, English marine standard clauses which refer to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have been included in our insurance contract.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is English governing clause, English law and practice in marine insurance has been admitted as our sources of law.

The Insurance Act 2015 is the first comprehensive statutory reform of the UK insurance law, since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it introduces thorough and, in some cases, fairly drastic reform of some of the core tenets of UK insurance law, including: the insured’s pre-contractual duty to the insurer, and remedies for its breach; the effect of insurance warranties and other terms tending to reduce the risk of loss, fraudulent claims; and damages for failure to pay an insurance claim in a reasonable time.

This study aims at researching recently reformed English insurance Act, and suggesting the revising bill of Korean Marine Insurance Act.

※ **Key words** : English Insurance Act 2015, fair presentation duty, fraudulent claims, insurance warranties, damages for failure to pay an insurance claim in a reasonable time